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21호

「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8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.11.28.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(4년간) 적용할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를 심의·의결하고, 2019.1.1.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월정수당 인상 (안 제3조)

| 연 도   | 지 급 액 (월액)    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2019년 | 1,650,140원             | 기 적용중 |
| 2020년 | 전년도(2019년)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| 누락 사항 |
| 2021년 | 전년도(2020년)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|       |
| 2022년 | 전년도(2021년)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|       |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회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, FAX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: [www.sangjucouncil.go.kr](http://www.sangjucouncil.go.kr)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  
○ 주 소:  
○ 연 락 처:

| 조 례 안 내 용 | 의 견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|